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70

발의연월일: 2020. 11. 18.

발 의 자:서범수ㆍ권명호ㆍ김용판

김희곤・구자근・박대수

윤영석·최형두·전봉민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경찰은 현재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세계 초일류 치안 강국을 이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로 주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하여 타 기관과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둠으로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 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 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 함(안 제2조).
- 다. 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함 (안 제3조).
- 라.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안 제4조).
- 마.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

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10조).

- 바.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안제13조).
- 사.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요건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
- 아.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 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은 비상임으로 함(안 제19조).
- 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제22조).
- 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함(안 제21조).
- 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사기진작 등을 소관사무로함(안 제23조).
- 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26조).
- 하.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 또는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27조).
- 거.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안제31조).
- 너. 경찰청장은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해당 시·도경찰 청장 및 다른 시·도경찰청장을 지원·조정할 수 있음(안 제32조).
- 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 사가 수립함. 또한 시·도 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해 의결을 통해 자치경찰사무에 한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4조, 제35조).

- 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제4조제1항의 국가경찰사무에 자치경찰사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제27조제3항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으로 보며, 제31조제1항의 자치경찰사무를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의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봄(안 제36조).
- 머.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 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안 부칙 제1조, 제2조).
- 버. 종전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청의 행위에 대한 효력 유지 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 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3. 범죄피해자 보호
 -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나.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다. 지역 내 다중운입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상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관한 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수사
-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경찰청과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 를 둔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⑤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10조(심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 · 개선에 관한 사항
-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4.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 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6.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 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 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 8. 제32조제5항에 따른 비상사태 시의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 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찰청

- 제12조(국가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 (治安總監)으로 보한다.
 -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⑦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구체적 수사지휘를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⑨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 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 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 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부 또는 과로 한다.
 - ② 경찰청장·차장·국가수사본부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 제18조(자치경찰의 조직)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 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20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한 1명,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한 1명으로 한다.
 -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 3. 해당 시·도경찰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 4.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 5. 해당 시·도경찰청의 직장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 6.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사람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사람
- 4. 그 밖에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 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시·도차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제57조를 준용한다.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 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22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시·도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 의 협의
-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 조정
- 14. 제32조제3항에 따른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 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제24조(심의·의결사항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3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 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제26조(사무기구)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③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 제27조(시·도경찰청장) ①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 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28조(차장) ① 시·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 ②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 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9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 ②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30조(직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 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비상사태 시의 특별조치

- 제31조(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①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 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 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 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32조(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특별조치) ①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경찰청장 및 다른 시·도경찰청장을 지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에 우선한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조정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해당 시·도경찰청장이 제1항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지원·조정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치안분야의 과학기술 진흥)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 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 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 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시·도 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결을 통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제주특별자치도 경찰기관에 대한 적용 특례

- 제36조(제주특별자치도 경찰기관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제4조제1항의 국가경찰사무에 자치경찰사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제27조제3항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으로 보며, 제31조제1항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정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8조부 터 제27조까지, 제28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3항, 제34조, 제3 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치경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 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 장비의 확보 등 자치경찰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다.
- 제3조(자치경찰의 시행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에 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범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을 하지 아니하는 시·도의 경우 제1항의 시범운영 기간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경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경찰위원회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이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등의 행위 또는 경찰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등의 행 위 또는 국가경찰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지방경찰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경찰청등"이라고 한다) 은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도경찰청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시·도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6조(종전 「경찰법」 부칙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찰법」 부칙 중 이 법 시행 당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시행후에도 해당 부칙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1항, 제9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 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및 제60조의2제4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③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31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한다.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및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 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을 "경찰"로 한다.

⑦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⑧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지방경찰 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을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를 "총경"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제219조제2항 및 제3항, 제309조 중 "국가 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 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⑤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 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⑥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 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⑧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라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7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 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4조의2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6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3항제7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경찰 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6조제5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8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6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 다.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8조의2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9조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0조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2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 장"으로 한다.

제114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항제3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5조의2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6조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

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 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24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②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제1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③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 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 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후단, 제97조제1항 및 제2항, 제98조제1항 본문, 제100조제3항,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제3항 후단, 제114조제1항, 제432조제2항, 제434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같은 법 제1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같은 법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468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2항, 제19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2조제2항, 제23조"로 하고,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8조제2항 중"「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를"「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3조"로 한다.

45 청원경찰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경찰공무원법」 제2 2조"로 한다.

④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항,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 단, 제9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건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 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4조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 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⑤ 해양경찰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